

3) 개정조문 및 해설

지방세법중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거나 포괄위임의 소지가 있는 아래 18개 조문을 개정하였다.

- ① 법제26조의2 제1항 : “천재·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” → “천재·지변·사변·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”로(관련조문 : 시행령 제11조 제1항)
- ② 법제26조의 제2항 :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” → “납세의무자의 사망·질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”로(관련조문 : 시행령 제11조 제4항)
- ③ 법제104조제2호의4 : “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.” → “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”로
- ④ 법제104조제4호 :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·건축물 및 건물과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” → “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(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)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, 저장시설, 도크시설, 접안시설, 도관시설, 급·배수시설,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(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)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”로(관련조문 : 시행령 제75조의2, 시행규칙 제40조의3·제40조의8)
- ⑤ 법제104조제7호의3 : “내무부령이 정하는 시설” →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”로 (관련조문 : 시행령 제75조의3, 시행규칙 제40조의7)
- ⑥ 법제138조제1항 단서 :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” → “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(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“대도시”라 한다)안에 설치가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”으로(관련조문 : 시행령 제101조 제1항·제102조 제1항)
- ⑦ 법제138조제1항제4호 :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